

-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1월 24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1월 29일

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진흥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의료법제37조,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 개정과 정부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 지침과 관련하여 관련에 부합되게 수정·보완 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, 폐기물수집·운반수수료 등 항목과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 및 도의 심의사항인 도시가스요금 항목 삭제(제2조2항의 4호, 6호, 7호)
- 위원장(시장)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(부시장)을 물가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개정(제3조2항)

- 공공요금 결정시 소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중 소비자 대표 구성비율이 25%이상 되도록 명시(제3조3항)
-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함에 따라 위원 위촉을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(제7조3항)

라. 참고사항

- 의료법 제37조, 폐기물관리법제13조,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정책의 주요 지표가 되는 물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부 지침이나 관계법령에 부합 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서
-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인 도시가스요금,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,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를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
- 위원회 구성에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, 위원중 소비자대표 구성 비율을 25%이상인 되도록 명시하여 소비자 의견 반영을 제고함으로서 개정 취지에 부합 하다고 사료되며
- 기타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